

# 성남 금토지구 A-3블록 중흥S-클래스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수정)

##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경기도 성남시 금토지구 내 A-3블록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최저 2층~지상 최고 20층 5개동 총 319세대 중 사전청약 공급 229세대(예정)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미정(추후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총 20세대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주택형	타입	총 세대수	사전청약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배정호수	비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084.1043A	84A	178	129	84.1043	25.0954	109.1997	12	
084.1202B	84B	97	69	84.1202	29.5332	113.6534	6	
084.1540C	84C	40	28	84.1540	27.3157	111.4697	2	
084.1430T	84T	4	3	84.1430	24.9410	109.0530	0	
소계		319	229	-	-	-	20	

※ 상기 내역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및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 성남시청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타입은 표기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청약시 주택형을 참조하여 주시고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내역 (단위:세대)

구 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84A	84B	84C	84T	계
장애인	경기도청	1	1	1	-	3
	서울특별시청	1	-	-	-	1
	인천광역시청	2	1	-	-	3
국가유공자 등 국가 보훈처 추천		1	1	-	-	2
장기복무 제대 군인		2	-	-	-	2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2	1	-	-	3
중소기업 근로자		2	1	1	-	4
북한이탈주민		1	1	-	-	2
소 계		12	6	2	0	20

### ■ 특별공급 일정계획 [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2022.07.25.(월)	▪ 일간신문 및 성남 금토지구 중흥S-클래스 홈페이지 ( <a href="http://www.gt-sclass.com">http://www.gt-sclass.com</a> )
• 특별공급 접수	2022.08.05.(금)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앱
•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2022.08.17.(수)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사업주체 지정 장소 방문 접수가 허용됩니다.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자격 입증 서류 지참)

## II

## 특별공급자격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2022.07.25.)(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청약통장 자격 요건(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현장접수처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사전 청약신청과 무관하게 사전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주택세대원 및 주택소유여부 사항은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사전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III

### 유의사항

- 본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격, 세대평면, 단지배치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본 청약 모집공고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현장접수처 방문접수가 가능함. (단, 현장접수처에서 청약시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등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항후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고시** 확정되오니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반드시 현장접수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2022.07.25.)(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